

【붙임 1】

게이트 스티커 계약조건

제1조(총칙)

부산김해경전철(이하 “위탁자”라 칭함)과 “계약상대자”는 부산김해경전철 게이트 스티커 광고대행사업에 관하여 본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.

제2조(계약문서)

- ① 계약문서는 광고대행표준계약서, 계약조건으로 구성한다.
- ② “위탁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본 계약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광고대행의 범위)

- ① 광고대행 대상 : 붙임2 참조
- ② 게이트 광고물의 제작,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일체
- ③ 기타 본 계약조건에 열거한 사항

제4조(계약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“위탁자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경우 공사는 이를 반환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시에 부산김해경전철 게이트 광고계약에 대한 추후 인수여부에 불구하고 계약금 전액에 대한 계약보증을 하여야 한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위약벌로써 전액 “위탁자”에 귀속된다.

제5조(광고료 등 지급이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완료 또는 중도 계약해지 시 미납광고료 등의 지급이행보증을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시에 부산김해경전철 게이트 광고계약에 대한 추후 인수

여부에 불구하고 계약금 전액에 대한 지급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.

- ③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“위탁자”는 다음 각호의 채권을 지급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 - 1. 광고연체료, 광고료
 - 2. 계약만료 또는 해지 후 광고물 철거 비용 등
 - 3. 기타 대집행 비용
- ④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급이행보증금으로 제2항 각 호의 채권을 충당한 후 잔여금은 반환하며, 정산 결과 부족금액이 있을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광고료의 납부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 게재실적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본 계약월수로 분할한 해당 월 광고료(정액광고료)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
단, 준비기간 중 또는 월의 중간에 광고사업을 시작할 때의 광고료는 일할 계산하여 당월에 납부하거나 익월 광고료에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다.
- ② 광고료의 납기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을 납부일로 하며, 토요일일 경우 은행의 다음 영업일을 납기일로 한다.

제7조(광고연체료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가 광고료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때에는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연18%를 적용한 광고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의거 징수하는 광고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
(체납월광고료 × 연체일수 / 연중일수 × 연체금리)
- ③ 연체 후 납부한 광고료 등은 광고연체료, 광고료 등의 순으로 충당한다.

제8조(광고료의 감면)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 - 1. 천재지변 또는 “위탁자”의 사정으로 광고 표출이 불가능하게 된 때
 - 2. 경전철 운영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미 부착된 광고물을 제거하거나 광고대행지정을 취소하였을 때

3. 경전철 시설물 보수 또는 경전철의 방침에 의하여 광고사업을 폐지하였을 때
 4. 기타 “위탁자”가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제1항의 사유로 기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할 때에는 광고부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.

제9조(광고료의 추가징수)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.
1.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광고물을 부착한 때
 2. “위탁자”가 정한 위치 이외의 장소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된 때
 3. 광고료 산정 시 명백한 하자나 착오가 발생한 때
 4. 기타 객관적이고 추가 징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② 제1항의 사유로 추가 징수할 경우, 초과 게재 수량 또는 착오금액에 대하여는 “위탁자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적재산권에 관한 책임 등)

- ① 광고물의 제작·설치·운용 등에 관련된 지적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록권 등 산업재산권, 영업비밀, 저작권 등)의 권리상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있으며,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취득 또는 수수료 지불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특히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, 분쟁발생시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.

제11조(광고물등관리법규 등 준수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옥외광고물등관리법, 동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및 기타 유관 단체에서 정한 광고기준과 “위탁자”의 광고물등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2조(광고물 등의 유지관리)

- ① 계약기간 중 광고물 등(시설물·광고물)은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유지, 관리한다.
 1. 광고물의 계·폐·침
 2. 광고물 등의 철거 및 이설
 3. 기타 광고물 등의 유지·보수 관련사항
- ② 광고물 등의 멸실·훼손·퇴색 등으로 경전철 역사 환경을 저해하거나 광고계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제11조에 위배되는 광고물이나 기 부착된 광고물에 대하여 민원 발생, 경전철의 방침에 따라 사회 정서상 부적절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, “위탁자”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광고물을 즉시 철거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“계약상대자”는 “위탁자”의 지시에 조건없이 따라야 한다.
- ④ 광고물 등의 훼손·망실에 대하여 “위탁자”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- ⑤ “계약상대자”는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경전철 시설물과 이용시민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·형사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⑥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등을 설치·부착·이전·철거 및 보수작업 등을 시행할 경우 “위탁자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승객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승객이 한산한 시간 또는 경전철 영업종료 후 시행하여야 하며, 시설물의 훼손·망실 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
제13조(계약수량 조정 및 디자인 개선 등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계약된 계약금액, 광고물 등의 물량, 규격, 설치위치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.
 1. 게이트 증감 및 시설개선 또는 게이트 수량 파악 오류 등으로 기 계약된 물량 및 설치위치 조정이 필요할 때
 2. 광고물의 규격 및 수량이 변경되었을 때

3. 주변여건 또는 환경의 변화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 필요할 때
4. 정부 및 부산시, 김해시 방침 등에 따라 계약물량 조정, 사양 변경 등이 필요할 때
5. 기타 “위탁자”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에 의한 광고료 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.

1. 계약물량만 조정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광고료만 조정 부과한다.
2. “계약상대자”의 비용부담으로 광고시설물의 광고면의 크기를 조정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디자인 개선 또는 변경 설치 할 경우에는 원가조사에 의하되 이전계약 원가조사금액 대비 낙찰율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4조(광고물 재질)

- ① 광고물 재질은 광고물 게·폐침이 용이한 리무블 필름(시트지 등)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고물 철거 시 접착제 흔적이 없어야 한다.
- ② “위탁자” 요청시,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재질을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검증한 방염소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방염필증을 부착하여야 하고 시공 후 10일 이내 “위탁자”에 방염소재 사용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광고물 등의 제거 의무)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광고물을 제거 또는 시설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.
 1.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된 때
 2. 게첨 승인이 취소된 때
-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광고물 게첨 승인조건을 위반하였거나, 승인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첨 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광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
- ③ “계약상대자”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“위탁자”는 기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광고물 제거, 시설물 철거, 원상복구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며, 이를 초과하는 제비용(대집행비용 등)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한다.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“위탁자”에게 제거 또는 철거물의 대가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6조(계약의 해지)

- ① 계약기간 만료 이외에 “계약상대자”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“위탁자”는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이행 최고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“위탁자”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
 2. 광고료를 9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
 3. “위탁자”의 사전 승인 없이 광고대행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
 4. 계약 위반으로 “위탁자”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, 특별한 사유 없이 “계약상대자”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
 5. “계약상대자”의 해산, 파산, 회사정리 등이 신청된 경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경우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기간 중 광고대행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해지 희망일 30일전 “위탁자”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재대행의 금지)

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대행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“위탁자”의 사전 서면동의(승인) 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.

제18조(대표자 변경 등)

본 계약체결 후 주소·상호·대표자 및 상업등기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“계약상대자”는 지체 없이 “위탁자”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9조(관할법원)

본 계약과 관련된 민·형사상의 관할법원은 “위탁자”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.

제20조(조문해석)

- ①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“위탁자”와 “계약상대자”는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례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공사 해석에 따른다.

제21조(사고의 책임)

- ① 광고시설물 유지관리 및 광고물 부착, 철거 시 “위탁자”의 지시위반 또는 “계약상대자”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책임으로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위탁자”의 시설물에 손실을 입혔을 때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.

제22조(신규매체 개발제안 등)

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조항에 명시된 광고종류 및 계약물량에 한하여 광고대행권이 있으며, “위탁자”가 본 계약에 열거한 광고매체 이외 신규매체를 개발하여 타 사업자에게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도 “계약상대자”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제기 또는 광고료 감면등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23조(고품격 광고 유치노력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신규 광고 디자인 기획안에 대해 “위탁자” 디자인 자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한 광고시안을 “위탁자”로 부터 승인을 득하여 광고를 게재하는 등 “계약상대자”는 건전하고 품위있는 고품격 광고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광고시안에 대해 외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광고물 등의 게재시에는 관련 서류를 “위탁자”에 광고게첨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4조(특약사항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게이트 광고사업을 위해 기존 게이트에 부착되어 있던 표기 및 안내문(사항) 이설 필요시, “위탁자”와 사전 협의 후 “계약상대자”

의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.

- ② 광고물은 게이트의 정상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 계침(부착)하여야 한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기간 중 광고매체가 일시적으로 폐침될 경우 또는 계약종료 광고시설물을 철거할 때 잔유물(접착제 등)을 제거하여야 한다.

【붙임 2】

광고시설물 세부내역

1. 광고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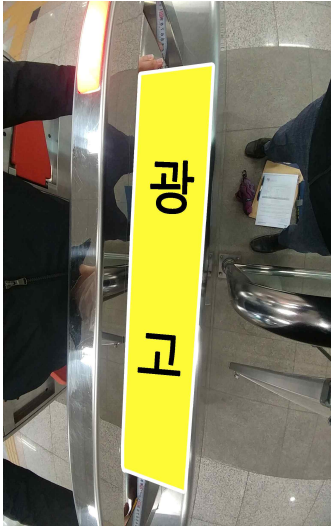


신규

역구내 게이트 광고(스티커) 139식(21개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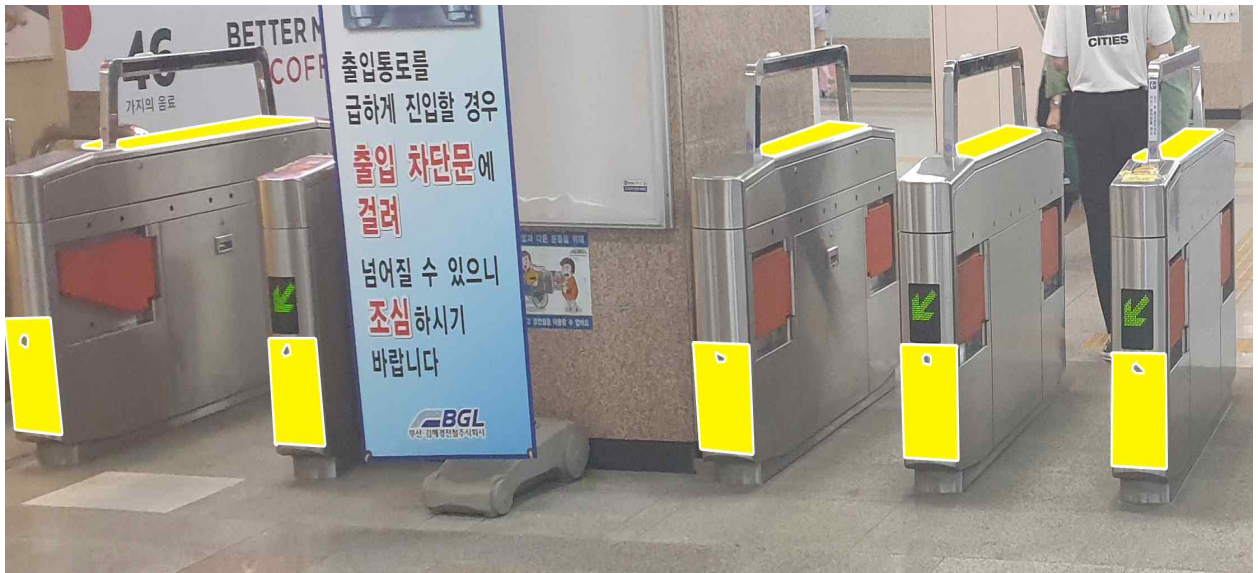
1-1. 역구내 게이트 광고(스티커)

역사	게이트 수량	게이트당 광고면 수 : 상단1, 하단2(양면)	총 광고면 수	규격 (단위 : cm)
사상	8	3	24	상단 20 x 85 하단 20 x 35
괘법	7	3	21	
서부산	6	3	18	
공항	7	3	21	
덕두	6	3	18	
등구	6	3	18	
대저	7	3	21	
평강	6	3	18	
대사	6	3	18	
불암	6	3	18	
지내	7	3	21	
김해대학	7	3	21	
인제대	7	3	21	
김해시청	6	3	18	
부원	7	3	21	
봉황	6	3	18	
수로왕릉	7	3	21	
박물관	7	3	21	
연지공원	7	3	21	
장신대	7	3	21	
가야대	6	3	18	
합계	139	3	417	

1-1-1. 게이트 광고(스티커) 위치 및 규격

상 단	하단	
	승차	하차
		
20cm x 85cm	20cm x 35cm *열쇠구멍 별도 절취	

전체 예상도



【붙임 3】

E/S 벽면 포스터 계약조건

제1조(총칙)

부산김해경전철(이하 “위탁자”라 칭함)과 “계약상대자”는 부산김해경전철 게이트 스티커 광고대행사업에 관하여 본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.

제 2 조(광고대행의 범위)

- ① 광고대행 대상: 붙임4 참조
- ② 광고물 및 광고시설물(이하 “광고물 등”이라 함)의 유지, 보존(이설 포함) 및 운용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
- ③ 기타 본 계약조건에 열거한 사항

제 3 조(계약이행 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“위탁자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현금납부 시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“위탁자”에게 귀속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될 경우 계약이행 보증금은 전액 “위탁자”에 귀속된다.

제 4 조(지급이행 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 계약해지시 미납 광고료 등 지급이행 보증과 광고물(시설물 포함)등의 철거 등 이행보증을 위해 “위탁자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의 지급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하며, 현금납부 시 계약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전액 “위탁자”에게 귀속된다.
- ② 현금으로 납부 받은 보증금은 전조 제2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.
- ③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 하였을 경우 “위탁자”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채권을 지급이행 보증금으로 충당

할 수 있다.

1. 광고연체료
 2. 광고료
 3. 기타 미납비용, 부당이득금 등 채무 및 대집행비용 등
- ④ 전항의 경우 지급이행 보증금으로 각 채권에 충당한 결과 지급이행 보증금 잔여금이 있을 때에는 “위탁자”은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하고, 채권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이를 별도로 “위탁자”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5 조(광고료 납부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계약금액을 계약월수로 분할한 해당 월 광고료(정액광고료)를 매월 25일까지 “위탁자”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단, 준비기간 중 또는 월의 중간에 광고사업을 시작할 때의 광고료는 일할 계산하여 당월에 납부하거나 익월 광고료에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다.
- ② 광고료 납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을 납부일로 한다.

제 6 조(연체 광고료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가 제5조의 광고료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한 때에는 월 광고료 전액에 연 18%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광고연체료를 “위탁자”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.
- ② 전항에 의거 징수하는 광고연체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.
(체납 월 광고료 X 연체일수/연중일수 X 연체이율)
- ③ 연체 후 납부한 광고료 등은 광고연체료, 광고료 등의 순으로 충당한다

제 7 조(광고료의 감면 또는 조정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“위탁자”은 광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1. 천재지변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광고대행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
 2. 부산김해경전철 시설물 보수 또는 기타 부산김해경전철의 사정에 의해 기 설치된 광고대행사업 시설물 등을 철거하였을 때

- ② “위탁자”은 전항의 사유로 기 징수한 광고료를 반환하고자 할 때는 광고 사업이 불능된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광고료만큼 차기 광고료 징수 시 차감한다.

제 8 조(광고료의 추가징수)

- ① “위탁자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료를 추가징수 할 수 있다.
 - 1. 광고료 산정시 명백한 하자나 착오가 발생한 때
 - 2. 기타 광고료 추가징수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만한 객관적 사유 발생시
- ② 전항의 사유로 광고료를 추가 징수할 때에는 본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광고물 등의 설치 등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등을 통한 광고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의장등록 권 등 산업재산권, 영업비밀, 저작권 등)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손상 없이 안전하고 견고하게 광고물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광고물 등의 게재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등을 게재코자 할 때에는 게재 7일 전까지 도안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첨부한 광고물 승인신청서를 “위탁자”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.
 - 1.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의 광고물
 - 2. 광고물 승인신청시 반려된 광고물
 - 3. 기타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 등
- ③ 제1항에 의한 게재 광고물의 관련법령 등에 정한 관계기관의 허가, 신고, 기타 심의 등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,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의 입증책임도 “계약상대자”가 진다.

제 11 조(광고물 등의 유지관리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광고물 등의 멸실, 훼손 등으로 광고 게재 불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원상 복구, 개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“계약상대자”는 운영 및 유지보수 전담조직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등의 오작동, 작동불능, 사양미달과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기타 귀책사유로 인해 경전철 시설 및 임직원, 이용객에게 피해나 손해를 입힌 경우 민·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는 광고물 등을 설치, 부착, 보수, 개량(개선)할 경우 사전에 부산김해경전철 유관부서와 협의하고, 경전철 운영 및 승객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계약물량 등의 조정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계약된 광고물 등의 물량, 위치, 사양, 디자인 등을 조정 할 수 있다.
 1. 광고물 등 과다 및 이용불편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과 역사 환경개선·리모델링 등 각종 개량·보수공사 시행 및 공익상 필요로 조정이 필요할 때
 2. 정부 및 부산시, 김해시 방침 등에 따라 계약물량 조정, 사양 변경 등이 필요할 때
 3. 기타 부산김해경전철과 “계약상대자”가 기술발전 반영, 승객편의(안전), 사업성 제고, 원활한 사업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합의한 때
- ② 물량 조정, 광고면 규격 확대 등으로 광고료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계약된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하며, 계약서를 변경하지 않고 산출된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조정기준일은 “위탁자”가 승인한 날로 하며, 물량 조정 및 사양 변경 등에 따른 제 비용(설치·철거·변경 등)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한다.

제 13 조(광고물 등의 철거 의무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김해경전철의 요청에

따라 발생일로부터 7일 내에 해당 광고물 등을 철거해야 한다.

1. 계약이 종료(만료 또는 중도해지)된 때
 2. 광고물 등의 설치(광고물 게재) 승인이 취소된 때
 3. 기타 “위탁자”가 공익상 또는 경전철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-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광고물등 설치 승인조건을 위반하였거나, 승인받지 못한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광고물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가 계약조건에 따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“위탁자”은 이를 철거, 기타 처분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른 제비용(대집행비용 등)은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하고 그 철거물의 대가나 보상은 “위탁자”에 청구할 수 없다.

제 14 (재 대행의 금지)

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상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산김해경전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재 대행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.

제 15 조(각종 통지)

“계약상대자”는 부산김해경전철과 계약체결 후 주소, 상호, 대표자, 기타 상업 등기 사항의 변경 등 본 계약유지에 필요한 내부 변경사항 발생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“위탁자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.

제 16 조(신규 광고사업 개발)

“계약상대자”는 붙임 광고시설물 수량단가에 명시된 광고시설물에 대해 광고대행권이 있으며, “위탁자”가 신규 광고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, 손실보상 및 기득권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 17 조(계약의 해지)

- ① “위탁자”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행최고 후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.
1. 본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
 2. 광고료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
 3. 금지광고물에 대한 부산김해경전철의 폐첨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때
 4. 부산김해경전철의 사전승인 없는 광고대행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양도

5. 계약상대자의 해산, 파산, 부도, 회생절차,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 등이 신청 또는 개시된 경우나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때
-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희망일 1개월 전에 “위탁자”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.

제 18 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

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여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.

제 19 조(계약내용의 변경)

계약체결 당시 예견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각종 여건 변화 등으로 본 계약 내용의 일부를 수정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김해경전철과 계약상대자의 쌍방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.

제 20 조 (분쟁의 해결)

- ① 부산김해경전철과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.
- ② 부산김해경전철과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협의하여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회부하여 해결할 수 있다.

제 21 조(비밀 준수)

부산김해경전철과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【붙임 4】

광고시설물 세부내역

1. 광고대상

재추진

역구내 E/S 벽면 포스터 40식(3개역)

1-1. E/S 벽면 포스터 광고(3개역)

역사	수량	규격(개당)
사상	20	80cm x 110cm
공항	12	
대저	8	
합계	40	

사진(예시)



ES 벽면 포스터 부착 전경

벽면 포스터 틀